

의안 번호	2588	【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7. 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7. 7.(화)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7. 16.(목)

2. 제안 요지(행정지원국장 김진희)

가. 제안 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고 지정 평가기준 등 교부·열람을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금고 지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교부·열람을 강행규정으로 개정(안 제9조제2항)
(현행)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
(개정)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줄임말로 변경

다. 근거 법규

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
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고 지정 평가기준 등 교부·열람을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금고지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9조제2항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교부·열람을 강행규정으로 개정
 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줄임말로 변경함.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지방회계법

제38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회계법 시행령

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2. 주민의 이용 편의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”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

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4.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

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4. 금고의 지정절차

〔2〕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.
-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